

第137回(定例会)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3號(附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目 次

○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1面

○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질 문 답 변 서

(자치행정과)

질문의원	조기태 의원(재무건설위원회-청운·효자동)
【 질 문 】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별 수강생이 15명이 되어야 현상유지 할 수 있는 분기점인데 5 ~7명이 되는 프로그램도 있다.	
○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1인당 1일 5,000원씩 월간 20일 동안 3명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담동의 경우에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3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말고 수강료 중에서 지출했는지 여부	
【 답 변 】	
○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신설·폐강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매월 수강생을 모집하다보면 그 지역 실정에 맞아 꼭 존치하여야 할 프로그램이 15명이 수강하다 어느 달은 9명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폐강 여부 결정은 각 주민자치위원회 사항임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단, 우리 구에서는 수강생이 10명 이하인 경우 강사료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 우리 구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기하고자 당일 자원봉사를 하는 봉사자에게 최소의 경비인 실비보상을 하도록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2001년도 월 400,000원, 2002~2003년도는 월 300,000원씩 지원하였습니다.	
○ 부담동의 경우 2001년 6월~12월분, 2002. 2월분이 300,000원 이상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2001년도 월 400,000원이 지원되었기 모두 예산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이며, 또한 2002. 2월분도 2002. 1월 275,000원 지출하고 남은 25,000원과 합하여 325,000원을 지출한 것도 예산 범위 내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산출기초의 3명의 뜻은 3명의 자원봉사자에게만 지원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여러 명의 자원봉사자가 봉사할 경우 1인 1일 5,000원이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보상 형태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질문답변서

(자치행정과)

질문의원	조기태 의원(재무건설위원회-청운·효자동)
【 질 문 】 ○ 청운동장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 답 변 】 ○ 동장이 지역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집행을 할 때에는 동장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지역대표로 선출된 의원님과 서로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의하면 청운동장의 금번 업무 집행은 원숙한 처리를 하지 못한 면이 보입니다. ○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적절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서

(자치행정과)

질문의원	조기태 의원(재무건설위원회-청운·효자동)
【 질 문 】 ○ 부암동의 위장전입 조사시 허위 보고한 직원에 대한 책임 소재 여부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 답 변 】 ○ 먼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는 특정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북고등학교 입학예정자에 대하여는 중부교육청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구분청 직원 4개 반 24명으로 특별조사반을 편성하여 사실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결과가 미흡하게 되었고, 이는 직원들이 고의적으로 누락이나 방조한 것이 아니라 주간에 주로 사실조사가 이루어졌고 위장 전입자의 주인이 산다고 강하게 주장할 경우 이를 면밀히 확인을 하지 못하는 등 조사방법상의 한계가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따라서 이를 계기로 다시 한번 해당 동에 보다 철저한 재조사를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 또 청운중학교 입학예정자에 대하여는 중부교육청에서 76명의 명부를 받아 해당 동(청운, 효자, 부암, 평창)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전입자 관리를 하겠습니다.	

질 문 답 변 서

(재 무 과)

질문의원	조기태 의원(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청운·효자동)
【질 문】 ○ 공사·용역·물품계약과 관련한 계약심사위원회 신설 운영 및 계약심사과 설치문제건	
【답 변】 ○ 각종 공사·물품구매·용역시행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 5억 이상 공사 및 3억 이상 용역에 대한 계약심사를 서울시에 의뢰하고, 자치구 시행 시비 5억 이상 용역 3억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서울시의 계약심사를 의무화하는 의견을 2003.12.10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며, ○ 계약심사위원회 설치 및 계약심사과 신설방안 중 우리 구의 실정에 맞으며 예산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